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855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기웅  
김상훈 · 구자근 · 엄태영  
강선영 · 안철수 · 이성권  
김기현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br>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br>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br>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br>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br>-----<br>-----<br>-----<br>-----<br>-----.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8.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u><br><u>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u><br><u>체 역량강화</u> |
| 8. (생    략)                                                                                                       | 9. (현행 제8호와 같음)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